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1년 4월 23일 (월) 15:00 ~ 17: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 주최 : 정 보 통 신 부  
■ 주관 :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1년 4월 23일 (월) 15:00 ~ 17: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 주최 : 정 보 통 신 부  
■ 주관 :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모시는 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터넷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과거에는 누리지 못하였던 여러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음란·폭력물과 같은 불건전정보가 쉽게 확산되는 등 정보화의 역기능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 1.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동 법률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보통신부는 동 법률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동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일반국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밝고 건강한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4월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양 승 택  
한 국 정 보 보 호 센 터 원 장 조 휘 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박 영 식

## 진행순서

### 개회사

15:00~15:10      양준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심의관)

### 주제 발표

사회 강경근 (숭실대 법대학장)

### 15:10~15:30    개인정보보호 강화

김정우 (정보통신부 사무관)

### 15:30~15:50    온라인상에서의 청소년 보호

홍성완 (정보통신부 사무관)

###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 15:50~17:00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강성진(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소장)

김근태(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 회장)

신재정(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신종원(YMCA 시민중계실 실장)

윤영민(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최영호(한국정보범죄연구소 소장, 변호사)

(가나다순)

## 목 차

### ■ 개회사

양준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심의관)----- 1

### ■ 개인정보보호 강화

김정우 (정보통신부 사무관)----- 7

### ■ 온라인상에서의 청소년 보호

홍성완 (정보통신부 사무관)----- 41

### <붙 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57

# 개 회 사

양준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심의관)

## 개 회 사

오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강경근 교수님과 발표자 및 토론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른 급속한 정보화는 인터넷을 이용한 비약적인 생산성의 향상, 생활의 편리성 제고 등 우리의 삶과 생활 전반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를 고도지식정보에 기반을 둔 보다 합리적인 사회로 변모시키는 순기능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보화의 각종 역기능이 출현하여 우리 사회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정보화 역기능으로서 사이버공간을 통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은 이미 그 사회적 용인의 한도를 넘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는 복잡하게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현대 사회의 존립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그동안 공들여 구축해 온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보화를 선도하였던 법률과 제도도 변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 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촉진을 통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의 단초를 제공해 왔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21C 정보화사회의 첫해인 작년에 대폭 개정된 바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은 off-line 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 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에서 종사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 사회 각계 각종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M&A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개인정보보호의무가 새로이 부여되는 off-line사업자의 범위, on-line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사업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위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의 표시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관련산업의 육성·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논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민간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정보화 추진정책과 정보화 역기능 방지 시책을 균형있게 추진함으로써 정보화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당기고 인터넷혁명이 가속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각자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각종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중 이번 공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인터넷데이터센터의 정보보호조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도 별도의 전문가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 4월 23일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심의관  
양준철

< 제1주제 발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중  
개인정보보호 부문 주요내용

김 정 우 사무관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담당)

〈목 차〉

I.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의 의의 .....	9
II.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14
III.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36
IV.	향후 추진 일정 .....	3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 부문 주요내용

### I.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의 의의

#### 1. 개정 배경

컴퓨터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는 등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화의 물결은 우리 사회를 지식기반 구조로 변모시키면서 수많은 순기능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각종 역기능들이 출현하여 우리 사회가 여러 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침해, 음란물의 유통, 해킹의 만연과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기타 인터넷의 개방성과 익명성으로 인한 수많은 사례 등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점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 와해될 우려도 있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부문 중 하나이다.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서 개인정보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그 수집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적절한 수준의 국민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그 보호와 이용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져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80년 9월『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 유통에 관한 지침<sup>1)</sup>』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8원칙을 제시하였으며, 1998년 10월『범세계적 네트워크 상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각료선언』에서는 1980년에 채택한 8원칙이 off-line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서도 적합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각국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동향과 더불어 선진 각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법제도적인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U가 1995년 10월 채택한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보호지침』<sup>2)</sup>에는 EU 수준으로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EU연내 주민의 개인데이터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1998년까지 동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제·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의 「Data Protection Act(1998)」, 스웨덴의 「Personal Data Act(1998)」 등이 차례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등의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EU의 기준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정비하였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법률에 의한 규율보다는 전통적으로 자율규제를 표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에 수반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짐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도 법적 규제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예컨대 미국은 1999년 1월에 「어린이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은 13세 이하의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공개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본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입법의 필요를 깨닫고 2001년 3월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였으며 금년 내 의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2)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는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와 함께 입법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도 시행하여 왔다. 특히,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 입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한다)에 의해 규율되어 왔으나, 현행법의 적용범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정되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이용하는 off-line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시 효과적인 피해구제의 마련 및 기업간 M&A 등의 경우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기업영업 활동의 보장의 조화 등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2000년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2001년 1월 16일 공포되었다.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주요내용

첫째,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적용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일반법을 마련하였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 의무조항의 적용대상자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망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한정된 것을 개정법(제58조)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에도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까지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on-line서비스제공자뿐만 아니라 off-line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개정법 제58조).

둘째, 개인정보처리 위탁과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수집·처리·관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탁받은 사람을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소속직원으로 보아서 위탁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개정법 제25조).

또한 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서비스제공자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변경되는 경우에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 영업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합병 등이 발생했다는 사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개정법 제26조).

셋째, 이용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요구권 등의 통제권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서비스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고지사항중의 일부는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개정법 제22조). 또한, 서비스제공자들에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이러한 권리 청구를 실현할 수 있는 contact-point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만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지위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27조).

넷째,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신설하였다.

아동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개정법에는 서비스제공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어린이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법정대리인에게

어린이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의 철회, 열람, 정정 등 접근 내지 통제권을 부여하였다(개정법 제31조).

다섯째, 개인정보관련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는 대개의 경우 피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반면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빠른데 이러한 피해구제를 법원이 처리하기에는 전문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다. 이에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구제와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조정 결과에 대하여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였다. 이 위원회는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적 운영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33조 내지 제40조).

## II. 시행령 개정(안) 제안사유

개정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거나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제안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조(개인정보보호지침)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형태 내지 재화 및 용역의 유형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계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가. 규정요지

개정법 제4조에 정통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정·고시 및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법에 의하여 법률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제안사유

o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구체화하여 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이 2000.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개정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적용대상의 확대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침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근거 규정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o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현행 시행령 제1조의2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뿐만 아니라 개정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게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령을 일부 수정하였다(시행령개정안 제3조제1항).

o 정보화의 촉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형태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형태(on-line vs off-line) 및 서비스유형에 따른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하여 필요하다.

- 이에 시행령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형태, 재화·용역의 유형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개정안 제3조제2항).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예시로서는 on-line / off-line 개인정보보호지침, 또는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들 수 있다.

o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행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련 업계 및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과 동시에 각 사업별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과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시행령개정안 제3조제3항).

## 2.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사항

제11조(개인정보 수집시의 고지사항)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가. 규정요지

개정법 제22조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였다.

### 나. 제안사유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사용용도,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 목적 및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에 현행법(제16조제3항)과 개정법(제22조)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방법 등을 고지 또는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시행령개정안에서는 현행 시행령(제7조)을 그대로 유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및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였다(시행령개정안 제11조).

-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의 예로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들수 있으며,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다량의 개인정보를 일괄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보유 및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열람 및 정정요구권 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 3.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제12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영업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한 때 또는 회사의 분할계획서나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지체없이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서면·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과실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일천재·지변 기타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간지(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일간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을 받은 경우, 합병 및 회사분할의 등기를 한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포괄수증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된 때에 지체없이 법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서면·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일간지를 통한 공지는 2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최소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는 최소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④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회사분할, 상속 및 포괄수증으로 제공받는 개인정보항목
2.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 가. 규정요지

개정법 제26조에서 영업양수, 합병, 상속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권리·의무가 승계·이전되는 경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 시기·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통지의무 발생 시점 등을 시행령개정안에 마련하였다.

#### 나. 제안사유

##### 1)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회사분할과 포괄수증을 명시

- 개정법 제26조는 일정한 사항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시행령개정안 제12조에서는 개정법에 명시된 영업의 양도양수, 합병, 상속 이외에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가 이전 및 승계되는 경우로서 합병 내지 상속과 같이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되는 “회사분할” 및 “포괄수증(包括受贈)”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 “회사의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규정된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을 의미하며
  - “포괄수증”은 민법 제1073조 내지 1090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 2) 통지의무 발생 시점

-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승계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만 법의 시행 및 해석에 착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통지시기를 세부적으로 정하였다(시행령개정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통지의무 발생 시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및 “회사의 분할”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다.

- 개정법에서는 “상속”의 경우에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sup>3)</sup>되기 때문에 피상속인 즉死者에게 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 시행령개정안에서는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 같은 이유로 포괄수증<sup>4)</sup>의 경우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게는 통지의무를 부여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 영업의 양도, 합병 및 회사분할은 대개의 경우 “당사자간 영업양도 및 합병 협의 → 계약체결 → 계약 이행 및 권리·의무 이전”의 절차를 거침이 일반적인데, 이중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점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통지의무발생 시점으로 정하였다.
  - 영업양도 및 합병 등의 협의단계에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양도 및 합병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임과 동시에 이용자에게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며
  - 계약이 이행되어 권리·의무가 이전된 시점을 통지시점으로 잡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보호가 미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그리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의 경우와 합병의 경우에는 각각 영업양도계약 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때를 통지의무 발생 시점으로 정하였다.
  - 다만, “회사의 분할”의 경우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한후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 회사분할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이 때를 통지의무 기산시점으로 정하였다.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4)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나) 영업양수인 등의 통지의무 발생 시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영업양수인 등의 통지의무 발생 시점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시점으로 정하였다(시행령 개정안 제12조제2항)
  - “영업양수”의 경우는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 등 영업양도 계약의 이행을 받은 경우로 정하였으며
  - “합병 및 회사분할”의 경우는 합병(합병분할의 경우 포함) 등기가 이루어진 때를 통지의무 발생시점으로 정하였다.
  - “상속 및 포괄수증”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권리·의무가 이전되나 상속인 내지 포괄수증자는 상속 및 포괄수증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상속 또는 포괄수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어 그 동안은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의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또는 “포괄수증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된 때”를 통지의무 발생시점으로 정하였다.

#### 3) 통지 기간

- 통지기간은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하도록 하여 서비스제공자 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 4) 통지 수단

- 통지의 수단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예시로 규정하고 기타의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제공자가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개정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서비스제공자가 과실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천재·지변 기타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 이러한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신문사의 본사가 서울에 있는 일간지) 또는 당해 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하도록 하였으며(시행령개정안 제12조제1항단서 및 제2항단서)
- 구내통신망사업자와 같은 별정통신사업자, 지방의 백화점사업자 등 그 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에 공고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중앙일간지 대신에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 공지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지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일간지(중앙일간지 또는 지방일간지)의 경우는 2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게재하도록 하고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는 최소 30일 이상 게재하도록 하여 최대한 많은 이용자들이 공지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시행령개정안 제12조제3항).

## 5) 통지 사항

- 영업양수인등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개정법 제26조에 통지할 사항을 동조제2항각호의 사항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측이 자신의 어떠한 개인정보보호항목을 제공받았는지와, 그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제4항과 같이 제공받는 개인정보항목,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통지할 사항으로 규정하였다(시행령개정안 제12조제4항).

## 4. 이용자 권리구제제도의 확충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법 제33조 내지 제40조에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3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사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5인으로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 안건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규정요지

개정법 제33조에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제40조에서 분쟁 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 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원칙으로서 위원회의 조직, 회의의 개최, 의결정족수 및 전문 소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였다.

### 2) 제안사유

- 회의체 구성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대표성을 규정하였다(시행령 개정안 제13조제1항).
-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5인으로 구성된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시행령 개정안 제13조제4항).
  - 사안이 경미한 조정사건 등 일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형태별(on-line vs off-line) 내지 서비스 종류별 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며
  - 전문소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시행령개정안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세칙”에 정할 예정이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조정사건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운영 하되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개정안 제13조제5항).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정보통신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 제3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법 제33조제3항제4호의 자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균등하게 포함되어도록 하여야 한다.

### 1) 규정요지

개정법 제33조제3항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였다.

### 2) 제안사유

- 개정법 제33조제3항5)은 위원의 자격요건으로서 학계, 공공기관, 변호사 등 제1호내지 제6호의 분야를 열거하면서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 개정법 제33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로부터 중립적인 인사인 반면에
  - 개정법 제33조제3항의 제5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의 규정에 의한 자는 서비스제공자 즉, 사업자를 대표하며

#### 5) 제33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① 및 ② (생략)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개정법 제33조제3항의 제4호(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제6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sup>6)</sup>)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의 규정에 의한 자는 모두 이용자 단체 즉, 소비자보호단체의 대표성을 지니는 자를 말하므로
- 개정법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동조 각호의 자를 모두 1인씩 위원으로 구성할 경우, 서비스제공자를 대표하는 자(개정법 제33조제3항제5호)보다 이용자를 대표하는 자(개정법 제33조제3항 제4호 및 제6호)가 다수를 차지하는 불균형을 낳게 된다.
- o 이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서비스제공자 대표(개정법 제33조제3항제5호)와 이용자대표(개정법 제33조제3항제4호 및 제6호)가 같은 수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령개정안 제14조).

-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다. 기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5조(사무국) 법 제33조제6항에 의한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사실확인 및 기타 사무 등을 처리한다.
-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위원회에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한다.
- 제17조(조정전 합의권고 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18조(자료요청의 기간 등)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3일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조정서) 법 제38조제3항의 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분쟁조정세칙)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 위원회의 운영,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쟁조정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규정요지 및 제안사유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 절차, 분쟁조정의 구체적 절차, 분쟁조정 세칙의 제정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제28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①법 제52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보호와 관련한 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업무의 지원
2.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3. 개인정보침해 관련 대책 연구
4. 개인정보침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수되는 사업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1) 규정요지

개정법 제52조제3항제8호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 2) 제안사유

-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 당사자간의 분쟁을 객관적 기관에서 간편·신속하게 조정하는 것과 아울러
  -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침해방지를 위한 상담 및 대책연구 등이 필요하며, 또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 개정법 제55조에 개인정보침해사건에 대한 과태료부과업무를 적정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통부장관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권한을 부

여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기술력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 기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개정법 제52조제3항제8호는 이러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업무의 지원과 개인정보침해방지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업무범위를 자료제출 및 검사업무 지원, 상담, 대책연구, 교육 및 홍보 등으로 명시하였다(시행령개정안 제28조제1항).
-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을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시행령개정안 제28조제2항)
  - 개인정보침해사건의 검사 및 자료조사업무는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집행업무로서 이러한 업무를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통부 본부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이를 전담 처리하는 것이 사실관계확인 등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며
  -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이용자에게도 침해구제창구를 현행 “정통부 본부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이원화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권리 구제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관련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정통부 소속 공무원의 조언을 받아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5. 권한의 위임

제29조(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검사
2.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3.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7조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 규정요지 및 제안사유

개정법 제56조에서 정통부장관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관련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의 등록, 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하였다.

## 6. 개인정보보호규정이 준용되는 자의 범위 등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①법 제58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1중 대형점,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중 여행업, 호텔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행하는 자
3.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 또는 동조제34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 행하는 자
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 또는 동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자(다만,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중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재화·용역의 형태를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하여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청, 검사, 시정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해당 사업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가. 규정요지

개정법 제58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준용되도록 하고, 이의 세부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고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감독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나. 제한사유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 개인정보 이용의 활성화 및 on/off-line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제공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적용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 개정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이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 개정법 제58조에는 준용대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대단히 광범위하게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개정안에 규정하기에 따라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사업자도 포함될 여지도 있으나
  - 개정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의를 “전기통신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 일반 개인들까지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규제의 실효성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 준용대상을 “사업자”내지 “영리를 추구하는 자”로 한정하였다.

## ○ 준용대상 사업의 분야로는

- 사업을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의료분야와 금융분야가 있으나 각각 의료법, 약사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어 이를 분야는 준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대신, 유통, 관광, 항공 및 교육분야로 정하였으며, 특수한 거래 형태인 통신판매,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분야를 규정하였다.
- 특히, 교육분야는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즉, 학교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반면에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 개정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 ○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자의 범위로는

- 금년이 off-line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에서 영세한 사업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그리하여, 유통 분야에서는 매장면적이 3천평이상되는 대형유통점, 백화점 등은 포함되도록 한 반면 소규모점포 운영자는 제외하였으며, 관광분야에서는 호텔 등 대규모 사업자만 포함되도록 한 반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여관 등은 제외하였으며, 방문판매업자의 경우도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는 제외하였다.
- 또한, 향후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원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개정안 제30조제1항제6호). 이 경우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시행령 개정안 제30조제3항).

## 2) 성질상 적용이 제외되는 법 규정의 고시

- 개정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게 “준용”하고 있는데
  - 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것이 성질상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 법률 조항의 특정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법 해석 및 적용의 문제이나, 법을 준수해야할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법규정을 정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나 재화·용역의 형태를 고려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였다(시행령개정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

## 3.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 개정법 제67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징수권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부과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뿐만 아니라 개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 동조 제2항은 이들 모두에 대하여 정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정법 제55조에는 정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관계물품의 제출 요청 및 검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외의 자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는 정통부장관이 자료제출 요청 및 검사 등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사업자의 주소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 개인정보침해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 정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자를 관리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해당 사업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포함)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시행령 개정안 제31조).

[표] 개정법 신규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안)

분야	관련 법령	적용대상 사업자 내지 기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유통	유통산업발전법 전법시행령 별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유통점(할인점, 전문점등)</li> <li>○ 백화점</li> <li>○ 쇼핑센터</li> <li>※ 매장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래시장</li> <li>○ 도매업체</li> <li>○ 소규모 점포</li> </ul>
관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업</li> <li>○ 호텔업</li> <li>○ 관광객이용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지노, 유원시설업</li> <li>○ 소규모 숙박업(여관, 여인숙)</li> </ul>
항공	항공법 제2조 제26호 및 제3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운송사업(항공사)</li> <li>○ 항공운송총대리점(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자로서 여행사가 항공운송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li> </ul>	-
교육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원</li> <li>○ 교습소(학원이 아니면서 과외 교습을 하는 장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대학교</li> <li>※ 학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법률에 의한 적용대상</li> </ul>
특수한 형태의 거래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7호, 제1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판매업자</li> <li>○ 다단계판매업자</li> <li>○ 통신판매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판매법시행령에 의하여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li> <li>- 방문판매등의 목적물이 농·축산물, 의약품, 보험 등인 경우</li> <li>- 소규모 방문판매업자</li> </ul>

### III.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위

제3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 가. 규정요지

개정법 제27조에서 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자격요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였다.

##### 나. 제안사유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제도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도 이용자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 개정법 제22조는 개인정보 수집시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개정법 제27조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 그런데, 서비스제공자들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도 그 직급이나 책임범위가 명확치 않거나, 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명목상의

지위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보호라는 당초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sup>7)</sup>.

- 이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위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임원”이나 최소한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的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시행규칙 개정안 제3조).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기존의 임원 등과는 별도의 직책으로 두도록 하거나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정할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명시방법

제1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명시방법) ①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의 제목란과 본문란에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광고”라는 문구와 전자우편의 본문란의 주요 내용
2. 전자우편의 본문란에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과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②제1항제1호의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최초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이어서 전자우편의 본문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가. 규정요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이 무차별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정법 제50조에서는 수신자의 수신거부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금지하면서 광고성 정보임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정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7) 한국정보보호센터가 2001. 2월 실시한 “개인정보보호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40%이며, 직급도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제안사유

- 인터넷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촉진됨에 따라 전자우편을 이용한 홍보나 마케팅 등이 새로운 영업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 전자우편의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전자우편을 송신하거나, 본인의 동의없이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 광고성 정보를 대량으로 송신하는 등 새로운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 선진 각국은 광고성 전자우편의 역기능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제도적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 미국은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ail Act of 2000(HR 3113)를 제정하여 상업적 전자우편의 명시, 수신거부 후 재전송 금지, 부적절한 routing 정보표시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위싱턴주 등에서도 관련 주법을 제정하여 상업성 전자우편 표시(예를 들어 메시지 제목란에 "ADV" 표시), 정확한 전송경로의 명시 및 수신자의 수신거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유럽연합에서는 원격계약에 관한 지침(Directive of 20 May 1997 Concerning Distance Contracts (97/7/EC)) 제10조에서 원치 않는 전자우편을 규제하고 회원국들에 대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현행법 제19조제2항에서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자우편, 패스, 전화 등으로 전송하는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전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 개정법에서는 현행법상의 규정을 일부 수정 보완하는 한편(개정법 제50조제1항)

- 광고성 정보중의 하나인 광고성 전자우편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서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 전송목적,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전자우편에 명시하도록 하고 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였다(개정법 제50조제2항).

- 이에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수신자가 전자우편의 제목만으로도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전자우편의 열람 내지 삭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우선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광고"라는 문구 및 본문란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시행규칙 개정안 제11조제1항제1호)  
- 이 경우 제목란의 "광고"라는 문구가 그 중간 내지 맨 뒤에 위치하게 되면 수신자가 그 내용을 쉽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광고"라는 문구를 제목란의 맨 앞에 명시하고 이어서 본문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규칙 개정안 제11조제2항).

- 또한, 전자우편의 본문란에는 수신거부의사를 전송자에게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규칙 개정안 제11조제1항제2호).

## IV. 향후 추진 일정

- 오늘(2001.4.23일) 선보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은 현재 정부내 여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의견을 반영하여 4월말에 입법예고, 5월에 규제개혁 심사, 6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그 제정근거인 시행령 개정 일정을 고려하여, 6월이후에 개인정보보호지침안에 대한 공청회개최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고시할 계획이다.

< 제2주제 발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중  
청소년보호 부문 주요내용

홍 성 완 사무관

(정보통신부 온라인청소년보호담당)

〈목 차〉

I.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규정 신설의 의의 .....	43
II.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	46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중 청소년보호 부문 주요내용**

### **I.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중 정보통신망 에서의 청소년보호 규정 신설의 의의**

#### **1. 신설 배경**

인터넷의 활성화는 국민경제의 생산성과 생활의 편리를 향상시키고, 전자 민주주의를 가능케 함으로써 투명한 사회 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음란, 자살, 폭탄제조 등 반인륜·반사회적 유해정보도 널리 확산되어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청소년 계층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인간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놓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에 따라 그 기술을 적절히 통제·제어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인 정보통신 윤리와 문화가 뒤따르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으로서 그 동안 우리는 세계의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서둘러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고 물리적 정보기반시설의 구축과 준비에 집중하다보니 이러한 정보화역기능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여 이에 관한 별도의 장(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신설하고, 총 4개 조항을 마련하였다.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보호 주요내용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제41조제1항).

정보의 내용을 선별하여 특정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성인확인 등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개발·보급도록 하였으며,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였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소년 보호시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 보호시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제4호).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 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1조제2항).

둘째,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제42조).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학부모나 교사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정보에 대해서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청소년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시킨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였는데(제64조) 이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형량과 균형을 맞춘 것이다. 다만,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였다(제42조).

셋째, 최근 청소년 접속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인 인터넷방송(웹캐스팅, Webcasting) 제공자에 대한 정보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보관의무자의 범위와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43조).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성인 인터넷방송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영업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성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당해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제67조).

이 밖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막대한 파급효과를 고려,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토록 하였고(제61조), 사이버 스토킹 및 음란정보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제65조).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신속·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제44조).

## II.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거나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가. 규정요지

개정법 제3조에서는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이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고 자율규제를 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나. 제안사유

- o 익명성, 광범위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티즌으로 대표되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외국의 경우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대개 “사업자 행동강령”으로 나타나는데 시행령개정안의 윤리강령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 \* 사업자 행동강령(Codes of Conduct)은 주로 자율모니터링, 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 제공, 불법정보처리,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이용자단체들도 윤리강령을 수립하여 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네티즌이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스스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윤리강령의 제정 · 시행을 통해 사업자 및 이용자의 자율규제 체제가 확립되면 규제의 신속성, 경제성, 수용가능성 등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정부의 공적규제의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o 시행령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강령의 법적 근거는 개정법 제3조<sup>1)</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이다.
  -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도 개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o 그러나, 윤리강령의 제정 · 시행의 근본 취지가 사이버공간의 각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율규제의 규범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들의 윤리강령을 제정 · 시행에 대하여 강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 이러한 점에서 시행령개정안 제2조의 법적 성격은 정부의 권고 내지는 권장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o 다만,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단체가 스스로 정한 윤리강령을 통하여 자율규제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단체의 윤리강령 제정 · 시행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다(제2조제3항).

1) 제3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구체적 내용은, 해외의 운영사례에 관한 정보제공,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각종 캠페인 지원, 이용자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적절한 지원책을 생각할 수 있다.

## 2. 청소년보호시책

제22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2.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사, 민간단체 등의 자율감시 활동의 촉진 및 지원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그밖에 법 제4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부수되는 사항

### 가. 규정요지

개정법 제41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통부장관의 시책의 일환으로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활동 촉진” 등 정통부 장관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다.

본 시행령은 이러한 정부의 활동 방향을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규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나. 제안사유

###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 현재 인터넷의 문제점은 음란·폭력정보 등 유해한 정보가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도 이용할 만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데에도 있다.

- 현실세계에서 청소년들이 즐기기에 적당한 장소가 없어 술집·카페 등 성인들이 이용하는 장소를 출입하는 것처럼 사이버공간에서도 재밌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없어 각종 불건전 정보에 접속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러한 정보를 청소년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예를 들면,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청소년권장사이트제도에 대한 사업자 및 교사, 학생 등 일반인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권장사이트로 선정된 사이트에 대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서 동 제도를 활성화하고,

\* 정부는 2000. 4월부터 매달 20개의 청소년권장사이트를 선정하여 2001. 4월 현재 까지 총 260개의 사이트를 선정·발표하였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업계에서도 청소년관련 우수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촉진 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행정지원, 전문가 자문 실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 2)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이용자의 대부분이 청소년계층이다. 따라서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피해가 그 어느나라 보다 심각히 우려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